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년월일 : 2023. 0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안전보안관 위촉(안 제3조)
- 다.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안 제4조)
- 라. 안전보안관 활동(안 제6조)
- 마.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안 제7조)
- 바.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 사. 활동 우수 안전보안관 포상(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4. 21. ~ 2023. 5. 12.) 결과, 의견 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사무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 가족복지과-14243(2023.4.11.)호, 안전교통과-32581(2023.4.13.)
 - (개선사항) 안전보안관 위촉시 성별·지역별 균형참여, 안전보안관 교육내용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포함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평창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평창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교육을 총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교육내용은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
 -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안전보안관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연락처	(033) 330 - 2019